圖 書 館 法 施 行 令(全文)

(1965年3月26日公布
大統領令 第2086號)

第1條 (目的) 이 令은 圖書館法(이하"法"이라 한다)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圖書館施設基準) ① 法 第5條 第3項의 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은 別表와 같다.

② 法 第25條 第2項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各級學校의 施設基準令에 의한다.

第3條 (私立의 公共圖書館設置 登錄) 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에 관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1號書式에 의한 公共圖書館設置登錄申請書에 施設明細書를 첨부하여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의 敎育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道의 敎育委員會에 제출할 때에는 市·郡敎育長을 거쳐야 한다.

第4條 (司書職員의 資格과 區分) ①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중 國·公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國·公立의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의 資格은 公務員任用令에 의하며 私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私立의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은 그 資格에 따라 이를 正司書와 準司書로 나눈다.

② 正司書가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文敎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敎部長官으로 부터 그 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1.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歷이 있는 者.
2. 大學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에 관한 學點을 20學點이상 取得하거나 圖書館學에관한 講習을 320時間 이상 履修한 者.
3. 準司書로서 司書業務에 3年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고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에 관한 學點을 10學點이상 取得하거나 圖書館學에 관한 講習을 160時間 이상 履修한 者.

③ 準司書가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文敎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敎部長官으로 부터 그 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1. 初級大學卒業者(實業高等專門學校 卒業者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在學중 또는 卒業후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에 관한 學點을 15學點 이상 取得하거나 圖書館學에 관한 講習을 240時間이상 履修한 者.
2. 高等學校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司書業務에 2年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고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에 관한 學點을 20學點이상 取得하거나 圖書館學에 관한 講習을 320時間 이상 履修한 者.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指定과 圖書館學에 관한 講習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文敎部令으로 정한다.

第5條 (圖書館業務의 講習) 國立中央圖書館은 다른 圖書館으로 부터 圖書館業務에 종사하는 職員에 대한 敎養講習實施의 要請이 있거나 法 第17條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業務에 관한 指導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講習을 實施할 수 있다.

第6條 (司書職員 또는 司書敎師 등의 配置基準) ① 法 第6條 第1項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學校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司書職員·司書敎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를 둔다.

1. 國民學校에는 1人이상의 司書敎師나 1人이상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를 둔다.
2.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1,200人이하인 때에는 1人의 司書敎師나 1人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를 두며 그 學生數가 1,200人을 초과할 때에는 2人의 司書敎師나 2人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를 둔다.
3. 實業高等專門學校·初級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大學(大學校의大學을 제외한다)와 大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500人이하인 때에는 2人의 司書職員을 두며, 그 學生數가 500人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800人마다 1人의 司書職員을 增置한다.

② 法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에는 그 圖書館建物面積이 330平方미터이하인 때에는 3人의 司書職員을 두며, 그 面積이 330平方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65平方미터마다 1人의 司書職員을 增置한다.

第7條 (圖書 기타 刊行物의 納本) ① 法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立中央圖書館에 圖書 기타 刊行物(이하 "刊行物"이라 한다)을 納本할 때에는 別紙 第2號書式에 의한 刊行物納本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國立中央圖書館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刊行物을 納本한 者에게는 別紙 第3號書式에 의한 納本受領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令 施行當時에 이 令에 의한 施設基準에 未達하는 公共圖書館은 1968年末까지 이 令에 의한 施行基準에 適合하도록 그 施設을 完備하여야 한다.

③ (同前) 이 令 施行전 國立圖書館學校의 卒業者와 延世大學校附設 韓國圖書館學堂(同大學校附設圖書館學校를 포함한다)에서 所定의 課程을 修了한 者 및 文教部長官이 인정한 機關에서 8週間이상의 圖書館學에 관한 講習을 받은 者는 이 令에 의한 正司書의 資格證을 받을 수 있다.

④ (同前) 이 令 施行전 初級大學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이상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文教部長官이 인정한 機關에서 圖書館學에 관한 學點을 10學點이상 取得한者 또는 3年이상 司書業務에 종사한 經歷이 있고 文教部長官이 인정한 機關에서 實施한 圖書館實務講習을 50時間이상 履修한 者는 이 令에 의한 準司書의 資格證을 받을 수 있다.

⑤ (同前)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正司書 또는 準司書의 資格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文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67年末까지 文教部長官에게 그 資格證의 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

別 表

公共圖書館施設基準

建物面積						藏書		基準人口
面積	閱覽室	兒童閱覽室	定期刊行物室	書庫	事務室	基本藏書數	年間增加數	
165平方미터	50席	20席	面積의 10%		面積의 10%	1,000卷이상	200卷	2萬이상 4萬미만
330平方미터	100席	30席	面積의 10%		面積의 12%	1,000卷이상	300卷	10萬미만
660平方미터	200席	50席	面積의 5%	面積의 10%	面積의 10%	1,500卷이상	500卷	20萬미만
990平方미터	300席	70席	面積의 6.7%	面積의 10%	面積의 9.3%	2,200卷이상	1,000卷	30萬미만
1,320平方미터	400席	100席	面積의 7.5%	面積의 10%	面積의 75%	2,800卷이상	2,000卷	40萬미만
1,650平方미터	500席	150席	面積의 6%	面積의 10%	面積의 6%	3,300卷이상	3,000卷	50萬미만
1,980平方미터	700席	200席	面積의 5%	面積의 12.5%	面積의 7.5%	5.000卷이상	4,000卷	50萬이상

備考: 1. 이 表 중의 基準人口數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2. 이 表 중의 建物面積에는 玄關 休息室 複道 化粧室 및 食堂등의 建坪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別紙第1號書式

公共圖書館設置登錄申請書

設 立 者 名
設 立 者 住 所
圖 書 館 名 稱
圖書館 所在地

本人은 別添 施設明細書와 같이 公共圖書館을 設置하고자 圖書館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圖書館設置의 登錄을 申請합니다

年　　月　　日

申 請 人

教育委員會 貴下